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문화교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현충사관리소의 하부조직인 관리과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이동하여 학사과를 신설하고, 문화재청 본부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2022. 1. 27. 시행)에 따른 위험성 평가 등 법정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담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문화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에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65호, 2022. 1. 18. 일부개정, 2022. 7. 19. 시행) 개정에 따른 중요출토 유물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궁능유적본부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중대재해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현충사관리소 인력 1명(9급 1명)을 문화재청 본부로 재배치하는 한편,

문화재청 본부 4·5급 정원 2명과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칠백의총관리소 5급 정원 각 1명을 각각 상호이체하고, 국립무형유산원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기술직군으로 전환하며, 국가민속문화재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무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무형문화재”로 한다.

제8조제6항제1호 중 “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사적(근대)”를 “국가민속문화재·사적(근대”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민속문화재(건조물만 해당한다)”를 “민속문화재”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교무”를 “교무과·학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2.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
3. 교무위원회 및 대학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원 업적평가 및 성과급에 관한 사항
5. 교원연구년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조교 및 비전임교원의 인사·복무 관리
7. 교원의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술연구·실천적 이론 적용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9. 산학협력 및 연구지원센터에 대한 업무 지원 사항
10. 대학원 연구진흥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
11.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연구용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1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부속시설 등(제2항제17호의2, 제5항제15호 및 제6항제10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전통문화교육원의 지도·감독
15. 그 밖에 교학처의 업무로서 학사과 및 학생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학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 중장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학과와 교과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개편 및 조정
4. 학과 평가제 운용 및 강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입학·휴학·복학·제적·졸업·전과·등록·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관리
6. 수강신청·수업시간표·실습 및 수업의 관리
7. 학점 및 성적관리
8. 대학정보공시제 및 교육기본통계 운용 총괄

9. 대학원 및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혁신 및 대학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1. 생활기반 전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2. 온라인 강의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13. 복수전공 및 부전공 등 제2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교육공간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원·국제문화재교육센터 및 문화유산혁신인재개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항 중 “기획운영과 및 관리과”를 “기획운영과”로, “행정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를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6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6. 충무공 유물의 보존·전시에 관한 사항
17. 공사계획의 수립, 공사의 설계·감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8. 수목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잔디·화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20. 충무공 유허 및 충무공 묘소의 지정·보호구역 정비에 관한 사항
21. 충무공 묘소의 관리·감독·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칠백의총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5 중 총계 “287”을 “289”로 하고, 일반직 계 “286”을 “288”로 하며,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1”을 “62”로 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0”을 “11”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96”을 “298”로 하고, 일반직 계 “295”를 “297”로 하며,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5”를 “66”으로 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0”을 “11”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8”을 각각 “27”로 하고, “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12의2 행정서기보 1 다음에 “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을 신설하고, “공업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15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무대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방송무대서기보 1”을 신설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15의2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무대서

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방송무대서기보 1”을 신설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1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3”을 각각 “20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00”을 “205”로 한다.

별표 17의2 중 총 계 및 일반직 계 “218”을 각각 “220”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17”을 “20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9 다음에 “전문경력관 10”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 ~ ③ (생략)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무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u>	<u><삭 제></u>
8. <u>국가민속문화재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u>	<u><삭 제></u>
9. <u>국가민속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궁능유적본부 소관 국가민속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u>	<u><삭 제></u>
10. <u>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궁능유적본부 소관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u>	<u><삭 제></u>
11.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u>국가민속문화재의 관리</u>	<u><삭 제></u>

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2. 시·도지정문화재 중 무형
문화재와 민속문화재(건조물
은 제외한다)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2의2. ~ 18. (생략)

⑤·⑥ (생략)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 ~ ⑤ (생략)

⑥ 근대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사적(근대 건축물 및 시설
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 및 국가등록문화재
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 15. (생략)

16. 시·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재(건조물만 해당한다)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2. ----- 무형문
화재-----

12의2. ~ 18.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국가민속문화재·사적(근대

2. ~ 15. (현행과 같음)

16. -----

----- 민속문화재-----

17. · 18. (생 략)

⑦ · ⑧ (생 략)

제9조(한국전통문화대학교) ① ·

② (생 략)

③ 교학처에 교무과 및 학생과
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 기
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임업사
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
다.

④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학사운영 중장기 · 연차별 실
행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시행

2. 학과와 교과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 · 개편 및
조정

3의2. 학과 평가제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5.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

6. 입학 · 휴학 · 복학 · 제적 · 졸
업 · 전과 · 등록 · 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관리

7. 수강신청 · 수업시간표 · 실습
및 수업의 관리

17. · 18. (현행과 같음)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한국전통문화대학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교무과 · 학사-----

--.

④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2.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

3. 교무위원회 및 대학인사위원
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원 업적평가 및 성과급에
관한 사항

5. 교원연구년제 운용에 관한
사항

6. 조교 및 비전임교원의 인사
· 복무 관리

7. 교원의 교육 · 연구 · 학생지
도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술연구 · 실천적 이론 적용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
항

8. 학점 및 성적관리

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부속시설등(제2항제17호의2 및 제5항제10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삭제

12. 산학협력에 대한 업무 지원 사항

13. 대학정보공시제 및 교육기본통계 운용 총괄

13의2. 대학원 및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의3. 대학원 연구진흥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

13의4. 연구용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14. 전통문화교육원의 지도·감독

15. 그 밖에 교학처의 업무로서 학생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 설>

9. 산학협력 및 연구지원센터에 대한 업무 지원 사항

10. 대학원 연구진흥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

11.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연구용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1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부속시설등(제2항제17호의2, 제5항제15호 및 제6항제10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전통문화교육원의 지도·감독

15. 그 밖에 교학처의 업무로서 학사과 및 학생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학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 중장기·연차별 실

- 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학과와 교과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개편 및 조정
4. 학과 평가제 운용 및 강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입학·휴학·복학·제적·졸업·전과·등록·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관리
6. 수강신청·수업시간표·실습 및 수업의 관리
7. 학점 및 성적관리
8. 대학정보공시제 및 교육기본통계 운용 총괄
9. 대학원 및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혁신 및 대학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1. 생활기반 전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2. 온라인 강의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13. 복수전공 및 부전공 등 제2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교육공간 조정 및 운영에 관

⑤ (생략) 제15조(현충사관리소) ① (생략) ② 현충사관리소에 <u>기획운영과</u> 및 <u>관리과</u>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u>행정사무관</u>으로, 관리과장은 <u>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u>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u>한 사항</u> 15. <u>평생교육원·국제문화재교육센터 및 문화유산혁신인재개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5조(현충사관리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u>기획운영과</u>----- ----- --- <u>행정사무관</u>----- ----- ----- -----. ③ ----- -----. 1. ~ 15. (현행과 같음) 16. <u>충무공 유물의 보존·전시에 관한 사항</u> 17. <u>공사계획의 수립, 공사의 설계·감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u> 18. <u>수목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19. <u>잔디·화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u> 20. <u>충무공 유허 및 충무공 묘소</u>
--	---

<신 설>

16. (생 략)

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충무공 유물의 보존·전시에
관한 사항

2. 공사계획의 수립, 공사의 설
계·감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목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잔디·화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5. 충무공 유허 및 충무공 묘소
의 지정·보호구역 정비에 관
한 사항

6. 충무공 묘소의 관리·감독·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칠백의총관리소) ① 칠백
의총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
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
한다. <단서 신설>

의 지정·보호구역 정비에 관
한 사항

21. 충무공 묘소의 관리·감독
· 지원에 관한 사항

22. (현행 제16호와 같음)

<삭 제>

제18조(칠백의총관리소) ① ----

---. 다만, 칠백의총관리소장은

② (생 략)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287</u>	<u>289</u>	+2
	.		.	.	
	.		.	.	
일반직 계			<u>286</u>	<u>288</u>	+2
	.		.	.	
	.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u>61</u>	<u>62</u>	+1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임업 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10</u>	<u>11</u>	+1
	.		.	.	
	.		.	.	

[별표 5의2]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296</u>	<u>298</u>	+2
	.		.	.	
	.		.	.	
일반직 계			<u>295</u>	<u>297</u>	+2
	.		.	.	
	.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u>65</u>	<u>66</u>	+1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임업 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10</u>	<u>11</u>	+1
	.		.	.	
	.		.	.	

[별표 10]

현충사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8</u>	• <u>27</u>	-1
일반직 계	<u>28</u>	<u>27</u>	-1
•	•	•	
•	•	•	
<u>공업서기보 · 임업서기보</u>	<u>1</u>	<u><삭 제></u>	-1
<u>또는 시설서기보</u>			
•	•	•	
•	•	•	

[별표 12의2]

만인의총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공업서기보</u>	<u>1</u>	<u><삭 제></u>	-1
<u>공업서기보 · 임업서기보</u>	<u><신 설></u>	<u>1</u>	+1
<u>또는 시설서기보</u>			

[별표 15]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행정서기보 또는</u>			
<u>방송무대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	·	·	
<u>사무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별표 15의2]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행정서기보 또는</u>			
<u>방송무대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	·	·	
<u>사무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별표 16]

국립문화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03</u>	• <u>208</u>	+5
일반직 계	• <u>203</u>	• <u>208</u>	+5
3급 또는 4급 이하	• <u>200</u>	• <u>205</u>	+5
•	•	•	

[별표 17의2]

공능유적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18</u>	<u>220</u>	+2
일반직 계	<u>218</u>	<u>220</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17</u>	<u>209</u>	-8
<u>전문경력관</u>	<u><신 설></u>	<u>10</u>	+10